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교육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송은희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참여연대, 「2016년 근로감독 결과로 본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실태」 보고서 발표
날 짜 2017. 05. 29. (총 5쪽)

보 도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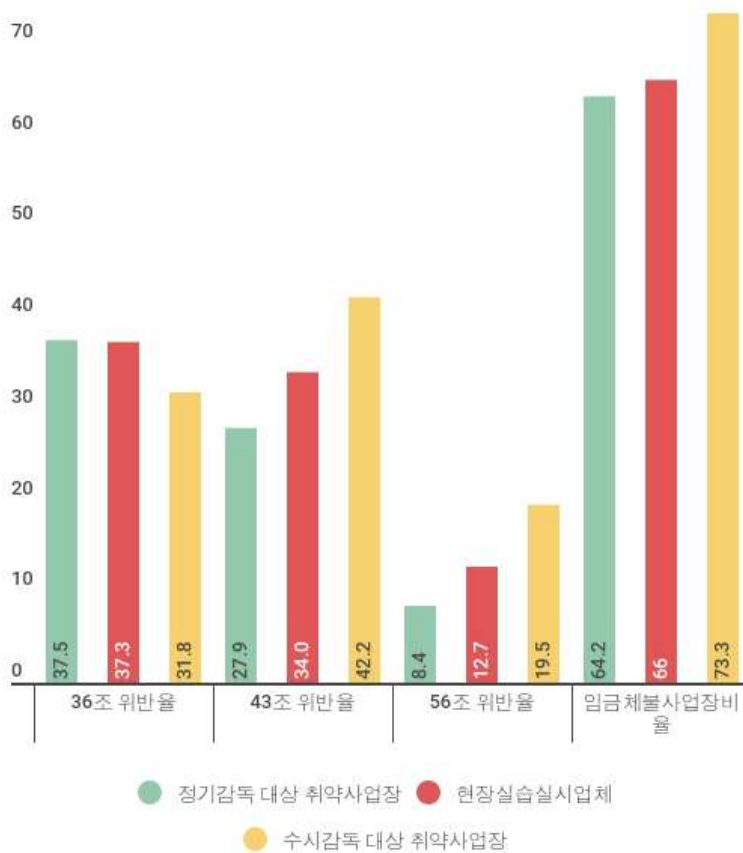
참여연대, 「2016년 근로감독 결과로 본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실태」 보고서 발표

-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정기감독대상 취약사업장과 비슷하거나 높아
- 노동법 위반 전력이 있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취약사업장 수준의 업체에서 현장실습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 근로감독 수준의 전수조사 통해 현장실습 실태 파악한 후에 2017학년도 현장실습 실시되어야

1.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과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됨. 현장실습실시업체의 1인당 체불액은 122만 원*임.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1인당 체불액은 118만 원,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1인당 체불액은 98만 원임.

* 이는 현장실습업체 소속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이고 일반노동자를 제외하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조건만 확인하면, 현장실습생 77명에 대해 약 8백만 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됨.

<그림1> '현장실습실시업체'와 '정기/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임금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위반율, 임금체불사업장 비율 비교



	정기감독 대상 취 약사업장	현장 실습 실시 업체	수시감독 대상 취 약사업장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 또는 사망한 근로 자에 대한 임금·보상금 등의 금품 지급 조 항) 위반율	37.5	37.3	31.8
근로기준법 제43조(재직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 위반율	27.9	34	42.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조항) 위반율	8.4	12.7	19.5
임금체불사업장 비율	64.2	66	73.3

- 1) 자료출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점검명
별 근로기준법 위반현황(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체불현황(2016년) 자료를 가공.
- 2)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정기감독 중의 하나인 <관서별
취약사업장지도점검>을,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은 수시감독 중의 하나인 <상반기
취약분야 기획감독, 하반기 취약분야 수시감독>을 의미함.
- 3) 위반비율은 점검실시업체 대비 위반이 적발된 업체의 비율(단위: %)

<그림2> 1인당 체불금액



1) 자료출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근로감독 체불현황 자료(2016년)를 가공.
2) 1인당 체불액은 체불액수를 체불인원수로 나눈 것임(단위: 원)

2.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한 ‘근로기준법 위반현황(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체불현황(2016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감독>(이하 ‘현장실습실시업체 근로감독’)이라는 점검명으로 현장실습실시업체 15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하였음(현장실습실시업체 소속 일반노동자와 현장실습생 모두 포괄하여 근로감독함).
 - 현장실습실시업체의 노동조건의 수준을 확인해보고자 현장실습실시업체 근로감독 결과를 고용노동부가 ‘취약’하다고 판단하여 집중적으로 근로감독하고 있는 사업장(<관서별 취약사업장지도점검>(정기감독), <상반기 취약분야 기획감독, 하반기 취약분야 수시감독>(수시감독))에 대한 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하였음.
 - 고용노동부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2016.03)에서 밝힌 10대 중점감독 항목 중 4개의 항목이 임금과 관련된 것임. 임금 관련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노동조건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라고 보아 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비교하였음.

*** <관서별 취약사업장지도점검>이하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 대상 사업장 예시**

- : ①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신고사건 제기 사업장(혐의 없음 내사종결, 불기소 의견 송치 제외), ② 취약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 · 폭행 발생 사업장(이상 최우선 선정), ③ 신고사건 조사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전체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장, ④ 3년 이내 신설 사업장 등 노무관리 취약 우려 사업장, ⑤ 자율개선사업 문제 사업장, ⑥ 기타 지방관서 선정 사업장

*** <상반기 취약분야 기획감독, 하반기 취약분야 수시감독>이하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 대상 사업장 예시**

- :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별 자체 지역 특성에 맞는 취약분야를 선정하되, 빅데이터 등을 통해 취약지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선정”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예시로 △휴일 없는 근로분야, △불법파견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분야, △법정수당 미지급 의심 분야, △인턴 다수 사용 분야, △장시간 근로 분야 등을 들고 있음.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2016.03..

3. 현장실습실시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과 관련한 조항인,

- ①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 또는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 보상금 등의 금품 지급 조항)’를 위반한 비율은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 보다 높고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위반율과 비슷한 수준임
- ② 현장실습실시업체가 근로기준법 ‘제43조(재직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조항)’를 위반한 비율, 임금체불사업장 비율은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 보다는 높고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 보다는 낮음
- ③ 현장실습실시업체의 1인당 체불액은 122만 원임. 비교대상 근로감독 중 가장 큰 규모임.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1인당 체불액은 118만 원,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1인당 체불액은 98만 원임.

4.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준으로 판단할 때,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 관련 노동조건은 노동법을 위반했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정기

감독 대상 취약사업장' 과 비슷하거나 더 열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현장실습이 실시되는 업체가 임금 떼어먹기 혹은 빼먹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킴. 노동조건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발생률이 높은 점, 임금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 과 높거나 비슷하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지점임.
-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에 대해 '학생들이 실습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조건이 취약한 사업장으로 내몰려지고 있다' 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 보고서의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 1인당 체불액 비교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여 주는 근거라고 볼 수 있음.

5. 현장실습실시업체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역할과 정책의 실효성 의심되는 상황임. 참여연대는 보도자료(2017.04.25., goo.gl/LDdws7)를 통해 현장실습실시업체에 대한 교육부 점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비교하여, 범위반내역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등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음.
- 2017학년도 현장실습이 실시되기 전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혹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기에 적절한 업체인지에 대한 판단 후 현장실습이 실시되어야 함.
- 현장실습실시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 혹은 관리·감독이 없이 2017년 하반기 현장실습을 강행하려는 교육부 등 관계 부처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 할 수 있음. 특성화고 학생을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고 있는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6. 보고서 전문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끝.